

제391회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11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25)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5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0)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78)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0)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0)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8)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56)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57)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46)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3)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1)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8)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8)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7)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91)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5)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51)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54)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6)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3)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71)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46)
2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73)
2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6)
2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29)
2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99)
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1)
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94)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6)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6)
3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3)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3)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76)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06)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11)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50)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52)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1)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1)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77)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9)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2)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5)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7)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3)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6)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6)
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64)
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74)
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10)
5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23)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6)
5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38)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7)
5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34)
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7)
58.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059)
59.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26)
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1)
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04)
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1)
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6)
6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9)
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9)
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2)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55)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7)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8)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5)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2)
72.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2112826)
7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15)
7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62)
7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8)
7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8)
7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4)

7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9)
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1)
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46)
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0)
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29)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46)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1)
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3)
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1)
8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1)
8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5)
8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9)
9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4)
9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3)
92.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495)
93.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612)
9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38)
9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6)
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58)
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9)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8)
9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8)
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41)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58)
1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4)
1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0)
10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53)
10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08)
10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75)
10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3)
10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62)
109. 부모보험법안(의안번호 2112249)
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2)
1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2)
1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71)
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8)
1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6)
1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44)
1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0)
1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2)
118.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768)
1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72)
1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6)
1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1)

12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40)
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43)
1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65)
12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7)
1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2)
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40)
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3)
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12)
1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59)
1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4)
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9)
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92)
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45)
1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3)
1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94)
1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37)
1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8)
1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1)
1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8)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6)
1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8)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1)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88)
1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26)
1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1)
1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7)
1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3)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6)
1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60)
1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61)
1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8)
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77)
1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3)
1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02)
1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7)
1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5)
1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4)
1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7)
1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8)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0)
16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978)
16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96)
1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6)
16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00)

16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25)
16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93)
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2)
1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43)
1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74)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7)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9)
1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05)
1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95)
1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4)
1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1)
1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9)
1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95)
1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56)
1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6)
1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01)
182.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394)
1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8)
1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35)
1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09)
1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3)
1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7)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2)
1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3)
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06)
19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8)
1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7)
19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7)
1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1)
1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8)
19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6)
1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50)
1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2)
1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6)
2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2)
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2)
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9)
2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96)
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73)
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3)
2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0)
2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48)
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6)
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8)

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0)
2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1)
2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8)
21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00)
21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67)
21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0)
216.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7)
2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6)
2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85)
2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19)
2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2)
2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7)
2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8)
2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6)
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2)
225.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112707)
226.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112843)
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3)
2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34)
2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4)
2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5)
2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76)
23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9)
2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49)
2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44)
2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17)
2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7)
2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1)
2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1)
2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2)
2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5)
2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76)
24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4)
2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2)
2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8)
24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6)
2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2)
2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5)
24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76)
24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16)
2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9)
2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6)
2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64)
25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1)

25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45)
25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41)
2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54)
25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6)
258.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안번호 2111356)
259.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491)
26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5)
26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2)
26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1)
26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69)
264. 타투업법안(의안번호 2110757)
2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04)
26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9)
26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4)
26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1)
26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8)
27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42)
27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27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보건복지부 소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5) ... 1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2) ... 14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0) ... 14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8) ... 14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0) ... 14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0) ... 14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8) ... 14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6) ... 14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7) ... 14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6) ... 14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3) ... 15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1) ... 15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8) ... 15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8) ... 15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7) ... 15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1) ... 15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5) ... 15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1) …	15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4) …	15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6) …	15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3) …	15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1) …	15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6) …	15
2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3) …	15
2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6) …	15
2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9) …	15
2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9) …	15
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1) …	15
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4) …	15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6) …	15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 …	15
3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3) …	15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3) …	15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6) …	15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6) …	15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1) …	15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0) …	15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2) …	15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1) …	15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1) …	15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7) …	15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9) …	15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2) …	15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5) …	15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7) …	15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3) …	15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6) …	15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6) …	15
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4) …	15
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4) …	15
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0) …	15
5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3) …	15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6) …	15
5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8) …	15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7) …	15
5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4) …	16
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7) …	16
58.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9) …	16
5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6) …	16
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1) …	16
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4) …	16

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1)	16
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6)	16
6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9)	16
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9)	16
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2)	16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5)	16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7)	16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8)	16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	16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2)	16
72. 국제입양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6)	16
7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5)	16
7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2)	16
7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8)	16
7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8)	16
7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4) ..	16
7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9)	16
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1)	16
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16
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0)	16
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9)	16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46)	16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1)	16
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3)	16
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1)	16
8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1)	16
8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5)	16
8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9)	16
9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4) ..	16
9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3) ..	16
92.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5) ..	16
93.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2) ..	16
9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8)	16
9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6)	16
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8)	16
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9)	16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8)	16
9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8)	17
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1)	17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8)	17
1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4) ..	17
1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0) ..	17
10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3)	17
10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8)	17

10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5)	17
10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3)	17
10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	17
109. 부모보험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9)	17
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2)	17
1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	17
1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1)	17
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8)	17
1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6)	17
1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4)	17
1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0)	17
1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2)	17
118.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8) ...	17
1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2)	17
1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6)	17
1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1) ...	17
12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0) ...	17
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3)	17
1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5) ...	17
12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7)	17
1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2)	17
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0)	17
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3)	17
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2)	17
1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9)	17
1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4)	17
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9)	17
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2)	17
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	17
1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3)	17
1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4)	17
1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7)	17
1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8)	17
1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1)	18
1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8)	18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6)	18
1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8)	18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1)	18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8)	18
1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6)	18
1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1)	18
1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7)	18

1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3)	18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6)	18
1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0)	18
1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1)	18
1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8)	18
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7)	18
1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3)	18
1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2)	18
1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7)	18
1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5)	18
1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4)	18
1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7)	18
1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8)	18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0)	18
16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8)	18
16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6)	18
1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6)	18
16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0)	18
16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5)	18
16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3)	18
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2)	18
1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43)	18
1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4)	18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7)	18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9)	18
1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5)	18
1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5)	18
1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4)	18
1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1)	18
1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9)	18
1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5)	18
1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6)	18
1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6)	18
1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1)	18
182.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	18
1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8)	18
1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5)	19
1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9)	19
1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3)	19
1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7)	19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2)	19
1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3)	19
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6)	19
19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8)	19

1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7)	19
19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7)	19
1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19
1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8)	19
19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6)	19
1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0)	19
1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	19
1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6)	19
2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2)	19
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2)	19
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9)	19
2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6)	19
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	19
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3)	19
2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0)	19
2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8)	19
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6)	19
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8)	19
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0)	19
2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1)	19
2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8)	19
21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	19
21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7)	19
21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0)	19
216.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7)	19
2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6)	19
2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5)	19
2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9)	19
2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2)	19
2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대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7)	19
2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8)	19
2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6)	19
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2)	19
225.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7)	19
226.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3)	20
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3)	20
2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4)	20
2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4)	20
2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5)	20
2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6)	20
23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9)	20
2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9)	20
2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20
2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7)	20
2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7)	20
2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1)	20
2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1)	20
2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2)	20
2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5)	20
2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6)	20
24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4)	20
2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2)	20
2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8)	20
24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6)	20
2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2)	20
2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5)	20
24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6)	20
24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6)	20
2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9)	20
2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6)	20
2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4)	20
25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1)	20
25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5)	20
25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1)	20
2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4)	20
25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6)	20
258.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	20
259.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1)	20
26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5)	20
26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2)	20
26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1)	21
26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9)	21

264.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7)	21
2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4)	21
26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9) ...	21
26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4)	21
26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1)	21
26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8)	21
27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2)	21
27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2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7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21
가. 보건복지부 소관	

(09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제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들과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전 상정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혜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양성일 제1차관은 차관회의 종료 후 10시경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해서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08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먼저 안전 상정에 앞서서 숙려기간 예외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을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107항은 숙려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5)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0)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8)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0)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0)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8)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6)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7)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6)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3)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1)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8)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8)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7)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1)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5)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1)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4)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6)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3)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1)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6)
2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3)
2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646)
2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529)
2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9)
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1)
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4)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6)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
3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903)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3)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6)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6)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1)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0)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2)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1)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1)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7)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9)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2)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2615)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7)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3)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6)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6)
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4)
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4)
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0)
5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3)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6)
5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8)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7)

5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4)
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7)
58.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9)
5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6)
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1)
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4)
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1)
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6)
6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9)
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9)
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2)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5)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7)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8)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2)
72. 국제입양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6)
7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5)
7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2)
7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8)
7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8)
7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

- 번호 2110584)
7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9)
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1)
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0)
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9)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46)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1)
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3)
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1)
8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1)
8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5)
8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9)
9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4)
9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3)
92.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5)
93.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2)
9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8)
9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6)
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8)
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9)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8)
9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8)
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1)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8)
1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4)
1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0)
10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3)
10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8)
10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5)
10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3)
10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
109. 부모보험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9)
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2)
1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
1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1)
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8)
1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6)
1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4)
1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0)
1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2)
118.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8)
1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2)
1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6)
1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1)
12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0)
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3)
1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5)
12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7)
1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2)
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0)
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3)
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2)
1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9)
1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4)
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9)
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2)
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
1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3)
1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4)
1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7)
1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8)

1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371)
1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428)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536)
1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558)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561)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588)
1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626)
1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751)
1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947)
1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973)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36)
1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60)
1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61)
1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338)
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옥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377)
1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493)
1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02)
1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27)
1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95)
1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604)
1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627)
1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828)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2890)
16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8)
16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096)
1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856)
16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00)
166. 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925)
167. 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193)
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2)
1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43)
1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4)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7)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9)
1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5)
1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95)
1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4)
1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1)
1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9)
1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5)
1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6)
1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6)
1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1)
182.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1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8)
1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5)
1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9)
1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3)
1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7)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2)
1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3)
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6)
19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8)
1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7)
19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7)
1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1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8)
19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6)
1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0)
1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
1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6)
2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2)
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2)
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9)
2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6)
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
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3)
2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0)
2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8)
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6)
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8)
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0)
2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1)
2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8)
213. **임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
214. **임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7)
215. **임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0)
216. **임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7)
2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6)
2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5)
2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9)
2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2)
2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7)
2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8)
2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6)
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2)
225.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7)

226.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843)
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963)
2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334)
2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504)
2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35)
2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176)
23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39)
2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9)
2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2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7)
2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7)
2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1)
2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1)
2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2)
2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5)
2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6)
24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4)
2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0562)
2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1968)
24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6)
2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2)
2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5)
24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576)
24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716)
2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9)
2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6)
2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4)
25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1)
25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5)
25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1)
2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4)
25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6)
258.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356)
259.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1)
26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5)
26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2)

26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581)
26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769)
264.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7)
2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4)
26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9)
26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494)
26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621)
26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8)
27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842)

(09시09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7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사전 협의에 따라서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 단말기 내 자료로 대체하고 대체토론은 예산안을 상정 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7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7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가.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장대리 김성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7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지금 행사 중으로 불참하셨지만—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96조 9377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조 96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약 16% 수준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K자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자활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및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신규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유망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보건산업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62.7% 증액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정 여건의 한계와 정부안 제출 이후 변화된 상황 등으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도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3쪽,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2021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입니다.

4쪽, 분야별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6.7% 증가한 80조 8171억 원, 보건 분야는 16.8% 증가한 16조 1206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5쪽, 기초생활보장은 14조 4596억 원으로 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0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해 5조 26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기본 진료비를 인상하고 부양의무자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에 8조 1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9.3% 증가한 4조 1328억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10만 7000명으로 8000명 늘리기 위해 1조 7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활동 지원대상을 1000명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20시간 더 늘리기 위한 예산 2006억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적연금 부문은 금년 대비 약 6% 늘어난 31조 7883억 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 2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은 일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금년 대비 8.6%를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59억 원, 사회적

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17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부터 27쪽 아동 및 보육 부문입니다.

아동 및 보육은 9조 942억 원으로 금년 대비 537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와 국공립어린이집 552개를 확충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출생 시 200만 원과 만 0세부터 1세까지 영아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 부문은 금년 대비 8.3% 증가한 20조 4420억 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628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1500원을 지급하여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금년 본예산 대비 4만 5000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발굴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1조 44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금년 대비 41.8% 증액한 4조 2964억 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등 1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금년 대비 18.2% 증가한 1086억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22.4% 늘어난 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22년, 23년 2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백신 글로벌 허브 추진을 위해 백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백신개발 R&D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건강보험 부문은 금년 대비 9.8% 증가한 11조 8242억 원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8992억 원 늘어난 10조 399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식약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간사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과 법안 심의까지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64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백신·치료제 등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 심사위원회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달라진 소비환경에 맞춰 외식·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김치 HACCP 적용 확대, 수산물 등의 방사능검사 인프라도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제품 안전을 위해 규제 수준과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의 품질·위험 예측이 가능한 QbD 시스템 도입을 확산시키고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첨단 의약품, 감염병 대응 제품에 대한 평가기술 개발연구, 규제과학 역량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에 대비하는 안전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시작하고 국내 생약자원의 보존과 연구 지원, 식

의약 데이터의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은 식의약 안전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식약처가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간사, 강기윤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일반 현황과 7쪽의 편성 방향은 제안설명으로 같음하고 12쪽 세입예산안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2년도 세입예산안은 21년 대비 56.4% 증가한 501억 원 수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3쪽, 22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1년 대비 5.5% 증액된 6446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6.2% 증액된 4767억 원, 기본경비 186억 원, 인건비는 14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종합적 위해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제고에 21년 대비 2.6% 증가한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은 스마트 HACCP 보급 확산을 위하여 표준선도모델 개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식품 등 표시제도 강화 사업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권장 소비기한 설정과 대국민 교육·홍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에 21년 대비 2억 원

이 증가한 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부적합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하여 수산물 도매시장 안에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지정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에 21.0%가 증액된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은 수입김치 제조업소 현지실사와 HACCP 의무적용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의약품 안전성 제고에 21년 대비 7.6% 증액한 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의약품 제조단계 특별점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은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은 국산 백신과 치료제 등의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의약품 품질 고도화 사업은 제약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시스템(QbD) 개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에 21년 대비 15.6% 증액한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은 국산 백신의 품질 확보와 신속한 제품화 기술 지원을 위

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에 21년 대비 5% 증액한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점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에 21.4% 증액한 1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첨단 독성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mRNA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감염병 대응 혁신 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사업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생물학적 제제 국가검정 사업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실험실(BL3) 신축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국내생약자원 보존과 의약품 개발연구 지원을 위하여 22년 5월 제주에 개관하는 국가생약자원 관리센터 운영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김강립 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질병관리청 정책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질병관리청이 개청된 이후 중앙부처로서 처음으로 편성·제출한 정부안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은 5조 136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7%, 4조 1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접종 및 백신 공급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대응도 지속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방역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등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환자, 결핵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결핵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국가통계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간의 건강격차 원인 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중독과 손상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해서도 관리체계 및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개발연구 지원, 국제협력 기반 구축 등 감염병 R&D 분야를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재정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 대비 8.9% 증가한 393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417.9%가 증가한 5조 1362억 원입니다.

3쪽,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안입니다.

내년도에 추가접종 및 백신수급 불안정성 그리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한 9000만 회분의 백신 도입비 2조 6002억 원과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4057억 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3조 1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등 진단검사비 4960억 원과 생활지원 그리고 유급휴가비에 2406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총 9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34쪽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5쪽,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한 1136%가 증가한 4조 4692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올해까지는 추정 및 예비비를 통해 추진하였으나 22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진단검사비,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등 방역 대응 소요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9162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또한 방역 대응 수요인 격리입원치료비 등을 증액하여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호남·충청·경남·경북 감염전문병원 구축 공사비와 22년도에 신규로 추가권역 1개소 설계비를 반영하여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 구축 사업은 중독, 손상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위해 신규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신·변종 감염병 진단·치료·면역에 필요한 공익적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140억 원과 신속개발 가능한 mRNA 백신 기술개발을 위해 123억 원 그리고 백신의 비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67억 원 등 R&D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5.1% 증가한 6233억 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HPV 예방접종 대상의 연령 확대 등을 반영하여 37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결핵 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잠복결핵감염치료비가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면서 금년 대비 4.3% 감소한 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응급의료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110%가 증가한 116억 원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유지 비용과 국가격리시설 운영비가 금년 대비 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 단말기 내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OECD 평균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OECD 지출, SOCX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12% 정도 되고요. OECD 평균 2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몇 %나 됐어요, 그러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12%……

○이종성 위원 평균 금액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입니다.

OECD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대빈곤율이 16.7%, 37개 회원국 중 4위 그다음에 국가행복지수가 37개 회원국 중 35위, 거의 꼴찌 수준이지요. 대표적인 불평등지수, 지니계수가 11위입니다.

우리가 OECD에 96년에 가입해서 이제 25년을 맞이하고 있고 지난번에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라는 부유한데 선진국 기준으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사회복지 수준은 이렇게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참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좀 과감하게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성숙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종성 위원 그래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대신 앞두고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전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소득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제가……

○이종성 위원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득 양극화나 불평등에는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예산을 좀 늘리고 빈곤율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안 하고 수십조 원씩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형태로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나중에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 처우 문제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몇 %나 준수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임금 가이드라인 지키라고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도 못 지키는 가이드라인 뭐 하러 제시합니까?

그다음에 질병청장님, 지난 8일 중대본 발표에서 40만 4000명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일 확진자가 한 5000명 정도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산출한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이종성 위원 그런데 예산안 보면 3만 8000명분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지난번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40만 4000명분 치료제 확보하려면 한 3515억 원 예산 추가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장관님, 지금 예산안 보니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예산 올해 대비 한 469

억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19년도부터 대상 인원 확대, 예산도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9월 말까지 주간활동이 49%, 방과후활동은 33%에 불과한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미집행 예산을 매번 추경 때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대상만 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서비스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실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월 44시간 돼 있는데 이걸 70시간으로 확대를 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할 때 활동 지원에서 차감하는 부분 그 시간도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 18세 이하 6개 유형 장애아동 대상으로 매월 최대 22만 원의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51억 증액해서 1000억 반영됐는데 내용 보니까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전혀 없어요, 영역별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지금 2380개소에 이를 정도로 난립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제공기관들에 대한 평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저서비스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서비스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제공 기관들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도 시급해 보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지원 차원에서 양육 부담 경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들이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장애로 인해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부모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의 육아 지원을 위해서 생후 12개월까지는 월 20만 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32억 정도 반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강기윤 간사, 김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775억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기능보장비를 평가를 통해서 우수등급 의료원을 대상

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우수한 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열악한 데는 계속 지원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의 핵심, 중심축으로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주 그냥 총알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대선 정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또 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이드라인은 올해 90% 수준이고요, 내년 예산안에는 약 94%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은 시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의 역할이,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관련해서 이용률 저조 부분은 위원님 주신 지적대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최저서비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개선 방안을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아 양육하는 부모 지원 필요하다는 것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장비가 보강이 되고 또 그 필요에 플러스해서 많이 진료가 일어나는 곳이라든지 또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같이 유념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예산 편성 이후에 경구용 치

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고 허가가 진행 중이어서 구매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증액이 필요하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종성 위원님, 총알같은 질의라고 권 장관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저도 장애인 교육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동 교육은 일반 교육과 다르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기자재 비치 또 이동권 보장, 재활장비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정 교육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표준교육비용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교육비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발표한 교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책정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2013년에 발표한 표준교육비용 단가의 100%가 책정될 수 있도록 장애아 교육료 예산 64억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장애아 교육료는 비장애아 교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표준교육비용 대비 100% 이상 수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인재근 위원 올해는 꼭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노력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다음에는 장애아 어린이집에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 중 절반 넘는 어린이집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나 급여체계 등의 이유로 특수교사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아동 교육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의 안정적 배치입니다.

장관님,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장애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자격수당을 조

금이라도 인상해 줘서 동기를 부여해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공감합니다. 특수교사 확보에는, 특히 유치원에도 특수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초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여 가야 특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교사 수당 인상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재근 위원 자격수당을 챙겨 주면 그분들이 그래도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교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연장전담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장전담교사 확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녁식사가 포함된 시간에 근무해야 해서 교사들을 찾기가 어렵고 또 무엇보다 그 시간대에 맡은 책임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의 시간 대비 일률적인 인건비 책정보다 근무시간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인건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장전담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연장교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다만 다른 면을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게요, 이렇게 되면 담임교사 지원 인력이 감소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검토해서 실천해 주세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런데 연장교육 교사가 이렇게 되게 되면, 특히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차이가 없어지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인건비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처우 개선 중에 대체교사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코로나 백신 휴가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체교사의 필요성은 더 절실히 보이지만 현실은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체교사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위해서 복지부가

마련한 대책은 보조(연장)교사가 대체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농어촌 같은 지역에는 대체교사 지원 불균형이 더욱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같이 지원을 기피하는 지역에는 교통수당 등 더 확대시켜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현재도 대체교사 월급여에는 기본교통비가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춘숙 위원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권익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 자립 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이 따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조직되고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권익옹호기관 운영 또 컴퓨터를 한 5개 정도는 운영하고 공공후견기관 보장 이렇게 해서 한 23억 17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더 증액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사업에 일부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가족 대상 교육 이것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 교육 또 표준교안 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올해 당사자와 가족 지원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년에 15억에서 내년 38억, 23억이 순증됐는데요. 그래

도 여전히 정신질환자 관련된 당사자 단체의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 대상 교육 이 부분도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춘숙 위원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걸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길게 설명,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안으로 제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지지 또 조언 또 이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 법 개정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형법 개정 이후로 현재 모자보건법 논의가 미뤄진 상태에서는 관련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이라도 먼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긴급상담창구 마련하고 상담원을 교육하고 또 종합상담창구를 최소한 권역별로 한 7개소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25억 59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 저희가 추계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또 이후에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이나 형법이 아직 입법 공백기 상태지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임신의 유지·종결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객관적·중립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심리적 지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임신·출산 상담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의견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은경 청장님 그리고 권덕철 장관님께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또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그 심각성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게 질병관리청에서도 또 복지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증의료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인과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중증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과성평가 결과 ④-1, ④-2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도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인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그레이존이라고 얘기하지요—백신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건 ④-1,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건 ④-2 이렇게 해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④-2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은 ④-1에 대해서도 1000만 원 하기로 했다가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특별한 근거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④-2에 대해서도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관련 공무원 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정말 1mm도 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요. 질병관리청에 제가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④-2에 대해서 추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하거나 못 하거나 그건 나중 문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최소한 정부에서 성의를 보인다면 ④-2에 대한 추계라도 돼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따로 갖고 온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해 봤어요.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얘기하시는데 이 그레이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합니다. ④-2에 대해서 추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사망자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 많은데요. 그게 의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서 혼자 살아야 하는 고등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을 같이 고민해 줄 거냐 이런 측면으로 복지부에서는 예를 들면 지원방안 이런 걸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질병청의 입장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2 추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처럼 이렇게 수작업으로도 다 하는데 왜 못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고통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단 1mm라도 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 요청합니다.

수많은…… 수많은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수를 확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을 할 건지 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얘기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 후로는 복지부한테 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주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위원님 추계하신 자료 저희 받아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이후에 안전성위원회를 일단 구성해서 발족에 들어갔고 지금 조사·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보상 범위에 대한 확대 부분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상반응 신고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국회와 또 정부 내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청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 내에서 총리님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

○전봉민 위원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질병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경구용 치료제를 원래는 4만 명이었는데 40만 명으로 지금 세 곳과 계약을 했지요, 사전 구매계약을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27만 명분은 사전 구매계약을 했고요. 13만 4000명분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그 27만 명분이 내년 2월 달에 도입이 됩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일단 허가가 진행이 돼야 돼서요, 아마 식약처의 허가가 진행이 되면 내년 2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앞전의 백신처럼 구매에 차질이 있다든지 구매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도입이 늦어진다는 것 하는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최대한 신속 허가하고 물량 조기공급에 대해서 계속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원래 당초에는 아마 4만 명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국감 때 질의를 했어요.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제때 도입이 돼야 되는데 도입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이 이 부분은 하여튼 챙긴다고 하시니까 한번 저도 지켜보고 청장님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국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저희가 지금 임상지원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네 차례 공모해서 한 7개 기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평가심의가……

○전봉민 위원 4차 공모 해서 투자심의 해서 일곱 군데가 선정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7개 기업이 지금 응모했습니다. 치료제가 네 곳, 그다음에 백신이 세 곳 이렇게 해서 응모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전문가 평가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집행률은 14%밖에 되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랄지 이런 걸 보고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봉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규정이 까다로운 건지 우리 기술력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예산에 보면 K-글로벌 백신펀드 이래서 신규로 500억을 또 반영했지요. 2년 동안 1조 정도 규모를 하는데 저는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임상실험 지원 같은 경우에도 14%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1조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치료제와 백신 치료를 한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저희들이 R&D를 가지고 3상을 지원하기에는 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펀드를 통해서 투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봉민 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다른 외국에서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개발이 돼서 국내로 막 도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40%, 우리가 일반투자 받는 게 60% 해서 지금 6000억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내년에 500억을 출자해서 5000억 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도 똑같이 5000억……

○전봉민 위원 1500억, 1500억 해서 3000억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게 저희가 종잣돈으로 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봉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했든지, 좀 늦은 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정부가 500억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받아야 되지요, 공공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이 부분은 민간에서 저희들이 받는 거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부의 소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글로벌 제약산업도 저희들이……

○전봉민 위원 하여튼 제 말 좀 하고 조금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병청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0세에서 19세가 지금 확진자 수가 3만 7000명 정도 해서 1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10% 정도 차지합니다.

○전봉민 위원 그런데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을 보면 27%밖에 되지 않아요.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전봉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역이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아직은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부와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접종에 대한 안내 계속 하고 학교 방역관리 강화하는 조치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도.

접종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이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한 60% 정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고1·2는 한 60% 지금 접종이 진행이 됐고요. 그 아래 중학교 연령층은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데……

○전봉민 위원 하여튼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나이는 좀 차이가 나지만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접종률은 되지를 않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좀 다른 방역대책을…… 왜 그러냐 하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접종도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26건이나 돼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건 의료계하고 협의해

서 계속……

○전봉민 위원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접종률 올리고 오접종 방지대책 더 강화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발달장애인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은 되지만 실질집행률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안에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있고 또 그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장애에 따라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한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수업활동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요. 안에 체계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이 집행률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심도 있게 장관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까 제가 이종성 위원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해 보고요. 제도개선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관련해서요, 복지부 소관에서 그간에 4개의 펀드가 있었는데 대개 정부 출자액이, 이를테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해서 조성금액을 1500억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모태펀드 형태로 해서 운용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백신 개발에 대한 필요성,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이 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필요한데 특히 임상 3상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펀드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기업이 그 기술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나 중증도, 감염재생산지수가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월드 인 데이터에서 한국의 방역 엄격성지수가 다른 나라—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고요. 우리 정부가 4주 지나고 재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이면 2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저희가 1단계 하면서 민생의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다 보니까 1단계의 완화 폭이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 하고 있고요. 아직은 10일 정도 돼서 좀 더 진행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지금 증가세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가능성 배제 못하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볼 때는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접종한 지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접종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가 계속 지속되는 가능성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래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부스터 샷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백신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얘가지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5개월 간격으로 부스터 샷 3분의 1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부스터 샷을 앞당길 계획 발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고위험군은 4~5개월 간격으로 더, 4개월 정도로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전 국민으로 부스터 샷 확대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저희가 요양병원이

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5개월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1단계, 2단계 발표했던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좀 더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을 동의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위원회 검토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영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4개월 단축하는 것도 고려가 가능한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4개월까지는 아니고요. 한 한 달 정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6개월에서 5개월로 한 달 정도 단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신현영 위원** 전 국민 접종도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저희가 청장년층 2차 접종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49세 이하의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은 3단계로 계속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한 3월 정도부터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접종이 또 시작되면, 부스터 샷 주로 지금 우리 정부가 mRNA, 화이자나 모더나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가 되면 노바백스도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국산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1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합성항원 백신이라는 거지요, 노바백스나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안전성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3차 접종은 이런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로도 접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일단은 허가가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기본 접종에 대한 허가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백신하고 교차로 추가접종 하는 것은 임상 근거가 필요해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임상연구를 시작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참고해서 추가접종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저번 예결위 질의에서 청장님께서 우리 국민 85%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12~17세에서 93%의 접종이 돼야 달성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약률을 보면요 17세는 69.4%로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좀 더 접종을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닌지, 결국에는 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화이자 백신이 이번에 5~11세 접종 승인도 받았는데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의 부작용 보고, 지금 기존에 우려할 만한 중증 부작용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화이자가 미국에서 5~11세 이상 허가, 자료에 보면 슬라이드 주신 것처럼 중증 이상반응 보고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접종 이후의 효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식약처 허가를 검토한 이후에 접종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현영 위원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 장관님, 지난 8월에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에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당 20명씩 10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복지부가 편성했던 약 42억 원 가량이 아닌 절반밖에 안 되는 21억밖에 정부안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삭감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니 초기 지역사회 정착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립지원사 임금 그리고 또 활동지원 보조, 주거환경 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탈시설 관련 사업을 총괄할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안은 아예 올해 예산

으로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예산만 반영이 됐는데 그대로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12개월 사업 진행이 아니라 6개월만 사업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성공사례가 도출돼야지만 분명히 탈시설 정책에 대한 오해가 해소될 수 있고요. 또 시설에 거주 중인 더 많은 장애인이 용기를 내서 우리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시범사업 예산 또 지역사회 전환센터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저희들이 준비 과정을 고려하고 또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됐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증액이 돼서 그런 데 더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원이 되면 훨씬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혜영 위원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시설 관련해서,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분명히 낮 시간의 활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고 그래서 환경 개선이나 기능 보강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는 아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또는 의료재활시설에는 기능 보강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탈시설 장애인에 지역 자립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함께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중증장애인 돌봄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능 보강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단가요?

○최혜영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1만 4805원입니다.

○최혜영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온전히 활동지원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개기관의 운영비가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된 돈으로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이 나눠 하는 구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10년을 일해도 똑같이 10년 내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퇴직금 지급이 어렵잖아요. 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니까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근무 연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부 중개기관에서는 이 운영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들한테 야간 근무, 주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사항, 구조 때문에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이 활동지원은 유사 돌봄서비스와 비교해도 노동 강도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런데 임금 수가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복지부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가를 현실화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 부분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상승보다 더 높게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를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지금 올해 1조 5070억 원에서 내년에 2355억 원이 증액된 1조 7405억 원입니다. 상당히 복지부가 노력을 많이 했고 재정 당국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조금 더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

○강기윤 위원 장관님, 이번에 복지부는 16% 증액이 되고 또 식약처는 5.5% 또 질병청은 417.9%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아마 국민들이 부처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그만큼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강기윤 위원 질병청장님, 제가 일괄질문 하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9000만 회분, 2조 6000억 정도의 백신 추가구매 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병청은 417.9%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대개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대응 여기에 아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청장님이 아까 인사말씀 하시면서 첫 화두가 뭐냐 하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및 백신 공급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두 번째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주요 내용에 보면 편성방향을 그런 쪽으로, 417.9%가 증액된 내용을 이렇게 편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사실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 질의하셨는데 이상반응이나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 더 찾아낸 것이 장례비 지원 8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월 1일 기준 해서 이상반응 신고자가 35만 4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저는 자칫 잘못하면 민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정부가 뭔가 대처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심의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④-1과 ④-2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약 2740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 ④-1 같은 경우는 1140억, ④-2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제가 나름 추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2740억이 되어야 이와 같이 이상 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달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뿐만 아니라 질병청장이 적극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 예산소위나 또 예산 심의할 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같은 경우 열악한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비입니다. 이게 아마 415억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같은 경우도 업무 환경이 참 열악한 것 같아요. 여기도 한 13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아동보호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509억 정도가 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곳곳에 아마 여러 가지 수요자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 일괄 업무 이양으로 해서 아마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역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를 통해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와 같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부도시 경남에 창원경상대 분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의 전공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어떤 분원을 비교해 봐도 화순전남병원은 16.5명이고 양산부산대병원은 17.9명입니다, 100명 기준 했을 때. 그런데 창원은 4.7명에 불과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4~5배 차이가 납니다.

1분……

그것을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안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접종자 488만 그리고 1차

접종 후 2차 접종 못 받은 사람이 44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백신 패스가 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은 분이나 안 맞은 분이나 갈라치기 하거나 또 좀 차등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미접종자 예외 사항을 보면 참 이 부분이 얼마나, 여기에 저촉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위중증 환자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30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나 위중증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11월 1일 기준 460명이 되었습니다. 병상 점유율을 보면 서울은 71.3% 또 인천은 73.4, 경기는 68.4 해서 수도권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현상이 안 되기를 저는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중증 환자가 지금 증가하는데 비상체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만약에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일 때 사실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것인지 하는 총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운 위원 답변 좀……

○위원장 김민석 예.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강기운 위원님 말씀 주신 이상반응 대응 예산 증액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원에 대한 추계 자료 저희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라서 추계가 좀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과 저희 의견 반영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중증 사례에 대한, 증가에 따른 비상계획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지난번에 일상회복 방안 발표할 때 중환자 의료대응 역량을 75% 정도를 상한선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병상에 대한 행정명령을 또 가동해서, 일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지침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중증 사례 증가가 대부분 요양병원·시설의 고령자, 상반기 접종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차별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접종자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제도를 좀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어서 예산 관련해서……

교육전담간호사, 대한노인회 관련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 이런 예산 증액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은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규모는 유지하고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지자체와 같이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상대 관련 전공의 정원은 그간에 대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간이 이 병원이 짧습니다. 18년에 인턴이 됐고 19년에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배정 절차에 따라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정은경 청장님!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허종식 위원 이제 워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약간 증가세잖아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3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불안불안, 우리 방역 당국도 불안불안하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다고 반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다시 방역을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실망감이나 또 자영업자들 저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뒤로 갈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상회복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은경 청장님께서 우리 국민들께 일상회복을 하려면 ‘국민 여러분, 이리이러한 방역은, 지침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일상회복 1단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각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업자들은 사업장을 지켜 주시길 바라고 학교는 학교를 지켜야 되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인데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사나 음주 할 경우에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또 공개된 장소, 환기가 잘되는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불필요한 사적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종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장관님,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허종식 위원 보면 생명수당 같은 것도 이제 두겠다, 공공병원 확충하겠다, 교육전담간호사도 확대하겠다, 또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이런 것들이지요.

예산을 보니까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까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에 2개소를 하겠다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1개소만 지금 잡혔잖아요, 설계비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1개소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교육전담

간호사제, 우리 간호사분들이 워낙 고생하니까 10명 중 3명이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것 들어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나 또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꼭 지키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지키겠다, 그러니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도 대화도 하고 협의를 해서 지키겠으니 저희들 믿고 기다려 달라’든가 이렇게 좀 전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불만이 없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으면 못 지킨 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 최소한의 그런 정도가 있어야만 이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아직 예산 심의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산편성 후에 이게 노정협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저희들도,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암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책임이라 그러는데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가 최근에 지정이 됐는데 관련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의료원이 의사가 부족합니다. 누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저도 직접 지방의료원 의사 수급 문제를 다뤄 보니까 첫째는 임금 때문에, 두 번째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립대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근무할 의사를 뽑자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국에 25개나 있는 지방의료원이 모두 다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 일곱 군데에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건지.

적십자병원도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 때 거점

병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대한적십자사와 좀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공공병원으로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지방의료원에 특히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비수도권이 문제입니다.

특히 교수요원이 이렇게 대학병원하고 연결해서 하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질적 수준 또 주민들의 평가도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국립대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우수한 인력들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해서 순환근무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소위 공공임상교수제도인데요, 이런 부분들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7개 적십자병원도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공공의 역할을 많이 수행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 역할을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과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이 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래서 추계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어있지를 않았습시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보면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전면 확대한다고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한 416억 원…… 지금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올해와 같이, 국공립의료기관에는 102억 원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 한 181개소에 한 314억 원 정도 추계를 하면 416억 원 정도의 추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로 하셨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교육전담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이 끝나고 나서 뒤에 노정협약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재정 당국에서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범사업 했던 것을 인정하는 수준인데요. 민간 부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형태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연숙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이라든지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등을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된 것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최연숙 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시인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최연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보건의료인력 현황 통계가 없어서 수급 계획이나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2020년 병원급 의료기관, 제가 간호사만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사실 보건의료인력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력 수급에 가장 문제가 많은 간호사 부분 현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신고 현황을

월별 기준으로 받아 봤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2개월 내내 인력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좀 통계가 저렇게……

○최연숙 위원 1000명에 가까운 간호사들이 근무하는데 열두 달 내내 인력이 변함이 없이 똑같다, 이것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저희가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1년 내내 간호사 현황이 동일, 의료기관 4323개소에서 1926개소가 또 매월 간호사 수가 동일하게 신고된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간호사가 한 명도 없다라고 신고된 병원이요, 33개나 됩니다. 그리고 병원 전체 간호사가 일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보다 많다고 신고된 기관이 406개소가 됩니다.

이런 일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닙니다.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요,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숫자가 OECD로 제출되는 공식 데이터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심평원에 의사는 주민번호나 면허, 근무형태, 근무시간까지 신고가 되지만 간호사는 요양기관의 총 간호사 수만 신고가 되고요, 간호관리료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가를 받는 인력만 정확하게 신고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의료인력도 간호사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다면 통계는 정책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최연숙 위원 그래서 보건의료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인력 수급 추계가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정책이 정확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다면 이 실태조사를 위해서 면허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한 30억 원 정도의 추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 부분은 지난번 노정협 의 합의 이후에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예산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노정이 같이 인식했고요. 재정 당국이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질병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미스터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일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일본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방접종률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들을 큰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접종 완료자 수가 짧은 기간에 대폭 늘어난 것 아닌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저희도 청장년층은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청장년층의 발생은 좀 감소하고 있는데요. 미접종자인 19세 이하와 상반기에 접종했던 60세 이상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만으로 지금 일본의 확진자 수가 200명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병원 위원** 뭔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던데요, 좀 더 정보를 저희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2500명에 사망자, 위중증자 같은 경우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본이 정말 2만 명 넘는 그런 상황에서 200명대로 왔다라는 것은 어쩔

든 배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강병원 위원** 적극적으로 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전문가들과 논의 하셔서, 일본에게도 좀 묻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까 보고 중에 사망자, 위중증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사망률이라든지 위중증 환자율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강병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상반기 접종자와 요양병원 입소자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강병원 위원** 상반기 접종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요양병원 입소자에게서 다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해서 난리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작년 3차 유행이 요양병원이었습니니다.

○**강병원 위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생명이 더 위협받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실행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잖아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강병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요양병원 입소자들은 다 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사이에서 위중증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문제, 단순히 부스터 샷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여기는 출입 같은 경우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 왜 이곳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이분들이 더 위독하게 물리는 것인지, 이유는 뭘니까? 대책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일단 요양병원이 가장 위험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0·80대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면역 형성이 좀 낮고 또 지속도 짧아서 면역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

을 가장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바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다인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인들이 있어서 최대한 방역관리, 추가접종 그리고 조사자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오히려 방역관리 문제에서 뭔가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접종 완료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입소하신 분들이나 거기에 뭔가 도와주시는 분들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확진자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방역관리에 큰 구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일단 면적이 떨어진 게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 방역의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밀집도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돌봄이 많아져 되기 때문에 접촉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험요인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뭔가 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접종 완료자일 텐데 왜 그분들에게서 다시 돌파감염들이 생기고 위중증으로 치닫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뭔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방역대책 중에 뭔가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 완료자들만 있는 곳인데 왜 자꾸 위중증 환자가 많이 생기냐 이겁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장관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OECD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분야가 한 5.5% 정도 예산을 쓰고 WHO도 5% 이상 권장을 하고 있는데 21년에 우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투자 확대하겠다고 해 가지고 22년도 재정투자 계획이 3429억 원이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실래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예, 시간 추가해 주시지요.

○강병원 위원 어쨌든 21년도 1월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

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그랬고 22년도 재정투자 계획을 3429억 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은 바라봤을 텐데 이 정도의 예산 계획은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저희 복지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 예산 1700억에서 내년도에 약 2000억 해서 한 451억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강병원 위원 적어도 국민들한테 정부가, 관계부처가 머리를 짜서 약속했던 것이면 그런 예산은 지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양시설 운영지원이라든지 코로나 우울, 자살예방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께서 국민 정신건강 분야 관련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정신질환자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강선우 위원 당시에 미등록자 다시 파악한 후에 등록을 유도해야 되고요, 또 수용시설에서 출소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재 후속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출소자나 혹은 미등록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관리대상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력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한 300명을 추가로 인력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건비라든지 또 야간·휴일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강선우 위원 그런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요.

미등록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수용시설 출소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 부처나 또 관련 단체,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마련되시면 저희 의원실이랑 공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파악한 이런 미등록자 또 출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지역사회에 정착을 시키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될 필요 있고요. 그리고 장관님이 밝혀 주신 그런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저희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사례관리 필요하다고 파악한 미등록자가 1만 7503명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출소하는 정신질환자들이 2000여 명이니까 이게 덧셈을 하면 2만여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반 국민들의 심리방역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책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말 수만 명에 달하는 추가적인 대상자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세심한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발굴·관리하는 업무는 물론이고요 또 자가격리자, 확진자, 아동·청소년 등등 일반 국민들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정말 24시간 정신건강 서비스 수행하는 지역사회 심리방역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업무 과중으로 센터 종사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고요. 또 인건비가 현실을 반영을 못 해서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 말 기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평균 근속연수가 3.2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19년에는 3.3

년, 18년에는 그나마 3.4년이었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우울 예방 심리방역,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미등록자 발굴·등록 등등 늘어 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전문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방역 인력의 고용안정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정부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같이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22년 정부안에 필요한 인력 충원 300명 반영이 됐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강선우 위원 이뿐만 아니라 사기진작 등 위해서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고요. 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응급개입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수당의 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실태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부에 국을 또 새로 신설하고 또 아까 강병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2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범부처적으로 해 가지고요, 이번에 정신건강 분야에는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마는 여전히 OECD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정신건강 분야가 좀 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울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위드 코로나 실시에 수고해 주신

장관님, 청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회관 앞에 가면 헌혈 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감 때도 확인한 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이 비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헌혈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방금 검사해 보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당히 좋다고 헌혈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몹시 기쁩니다. 오늘 여기를 마치고 나가시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드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면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용 중환자실 등 각종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바지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망자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총 163명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된 7월 한 달간 누적 사망자 77명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은 57%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수도권은 70% 이상으로 비상계획 실시 기준에 육박했지요.

현재 지표들이 예상한 수준인지 아니면 예상 범위를 넘어선 수준인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확진자 규모는 예상한 범위 내에 있는데요. 위중증 사례가 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31일 정부는 주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주요 7개 관리지표를 매주 화요일마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9일에 예정된 발표를 돌연한 주 연기했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지금 보여 주신 것처럼 이 지표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한 주간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연기한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소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만큼 있는 대로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국민께 설명하고 설득을 구하는 게 맞다고 여깁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위드 코로나에 동의했고 위험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게 역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갑작스러운 연기 같은 게 없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지표체계는……

○**김미애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리고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난 국감뿐만 아니라 올해 열린 거의 모든 전체회의에서 백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대한 건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사반 인과성 심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성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현재 6개 질병에 한해 인정하는 ④-2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따라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22억보다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 상한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④-1의 경우에는 향후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유족 위로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중증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과 정액간병비 지급을 통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④-1 예산도 3000만 원으로 확대했고 또 일부는 보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

○**김미애 위원** 시간이 자꾸 가서,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러면 긴급복지나 재난적의료비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재난적의료비는 10건으로 지급액은 1200만 원, 긴급복지도 32건으로 6500만 원 지급한 것에 불과하지요. 이걸로는, 국민들께 더 이상 이걸로 만족하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④-2의 경우에도 사망 유족 위로금을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진료비도 최대 3000만 원 또는 가능하다면 전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렇게 나가야지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정부를 신뢰하고—계속 지금 부스터 샷도 해야 되는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인력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 인건비, 운영비 등이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여기도 수도권 중심으로 매주 2000명 이상 재택치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요. 향후에 비수도권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 예산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한꺼번에 주시고……

그다음에 돌파감염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백신별로 돌파감염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얀센과 모더나를 비교하면 무려 60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돌파감염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이고 백신별로 다르고 고령층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검토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먼저 위험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일 날 지표체계를 일부 사망·위중증 중심으로 개편해서 홈페이지나 주간브리핑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계획에 대한, 발동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라는 핵심 지표는 제시했지만 좀 더 세부적인 지표를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특히 ④-1도 늘어나고 또 일부는 보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④-2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은 인과성과는

별도의 지급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별 돌파감염은 저희가 매주 보고에서 발표드린 것처럼 얀센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한 번밖에 접종을 안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 하는 것을 이미 안내해서 접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령층에서는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잘 안 생기고 또 면역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고령층 자체의 면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50대 이상에서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접종 간격을 좀 더 단축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취약성은 계속 보고드린 바처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5개월부터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관련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송과 관련된 예산은 특교로 협의가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 부 예산으로 좀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대해서 좀 여쭙려고 그러는데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친권자가 존재하는데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현재 현행법에는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고민정 위원** 그런데 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게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1년 가까이도 걸린다고 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동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 부분은 법률 개정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법률 개정이 돼서 그 절차를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민정 위원** 이게 법원의 그 과정을 어떻게 생략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동복지법 20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 해당 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똑같이 후견인 제도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폭력 예방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을 나눠서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 부분은, 아동학대 속에는 성폭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분리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왜냐하면 성폭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성적으로 뭔가 불쾌감을 느꼈을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성폭력에 해당이 되니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땐 얘기를 해라’ 이런 교육인 건데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훨씬 범주가,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넓기도 합니다. 때리거나 혹은 어떤 방임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성폭력에 들어가지 않는 거여서 아동 입장에서는 내가 좀 맞아도 ‘맞을 짓을 했나’, 나를 좀 어딘가에다가 따로 분리를 시키거나 가둬 놔도 ‘나는 그래도 되는 건가, 이걸 성폭력 교육에서는 받지 않았던

내용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학대 예방교육이 대부분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등을 통해서 사건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보면 대부분은 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고민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아동 입장에서는 나한테 ‘신고 해라’ 혹은 ‘그것은 일러야 된다, 이것은 아동학대다’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하는 사람하고 동일할 경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공기관, 복지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의무화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소요 자원 이런 것이 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정 위원** 저희랑도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료법 36조 2호에 보면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에 의료기관 점검 결과를 하신 걸 보니까 1200곳을 하셨는데 국공립병원은 50이고 민간병원은 1155곳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3%가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병원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미흡’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병원도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민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이어서 고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장관님, 지난 9월 2일 날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를 이루셨는데 그때 중요 쟁점 중의 하나가 생명안전수당이라고 불리는 감염관리수당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고영인 위원 어쨌든 이걸 제도화하자라는 것이고 22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합의 이전에 정부 예산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 6개월 지분 1200억 원 이게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질병청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예산 편성 이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장관님하고 청장님한테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이 2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 거리에서 웃음꽃도 좀 피기 시작하고 또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도 조금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한 측면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가 또 확진자를 너무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다시 이전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또 이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양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다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놓인 난제는 이렇게 증가할 경우에 사회적 불안은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거리두기 강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견된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대응 방안의 수립 시점, 우리가 시작점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 기조 변경의 변곡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

을 우리가 펴 나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즉 다시 얘기하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이런 시점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아야 되느냐 이것을 나중에 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거의 국민적 합의 수준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것들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국처럼 하루에 5만 명이 확진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기조를 밀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축소해서 당장 우리가 1만 명이 되면 진행할 건지 다시 후퇴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저 정도가 되면 다시 후퇴하니까 그 전에 국민들이 자발적 예방도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3000명, 4000명 되면 정치적 공방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책 기조의 변곡점을 잡기 위한 논의를 좀 더 활성화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여론 형성들을, 즉 탐색을 해서 이것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 마음 대비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먼저 하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저희가 어느 시점에 비상계획을 작동할 건가에 대해서는 계획 발표하면서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을 가장 핵심 지표로 제시를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75%가 넘어가면 비상계획 작동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진자 수라거나 미접종자의……

○고영인 위원 그러면 75%면,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면 그렇게 예상……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 부분은 병상을 우리가 얼마나 확충했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비율은 75%지만 병상은 계속 늘어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상에 대한 것들은 계속 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복지부가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병상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영인 위원 그러면 그 가동 병상을 확대시켜 나가는 추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예측해서 연말 시점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시점이 넘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긴

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진자의 숫자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조금 더 세부 기준에 대한 것과 절차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안내하고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요 여론에 대한 부분 또 위원회 검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리면요 총리실에 여론 수렴을 위해서 총리님과 그다음에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방역의료 분과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고드린 그런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상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5000명까지는 확진자가 나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료대응체계가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의료……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은 또 7000명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병상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해서 미리 행정명령을 내렸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증환자와 그다음에 준중환자 혹은 준등증 이렇게, 소위 의료계에서는 스텝다운(step-down)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병상도 좀 여러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면 대략 한 7000명 정도 보면 되나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요. 아무튼 병상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 질의 순서인데요. 여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위원장대리 김성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이번 정부 들어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88% 수준에서 90% 그리고 내년에는 94%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그런데 여전히 시설에 따라서 또는 지역별로 그리고 국고지원 시설이 아니면 지방이양 시설이냐에 따라서 여전히 격차가 큰 것도 사실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위원장대리 김성주** 그래서 지난 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적도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그래서 전임 장관께서 2018년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대회에서 적어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도록 하자고 해서 큰 기대를 모았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그래서 현재는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안에도 충분하게 예산이 담기지 못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한 983억 정도 해서 11.4% 증액을 했는데, 여전히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그래서 저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복지부나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장기 근속을 피하게 되고 이직으로 인해서 안정된 운영이 안 된다는 우려가 좀 큼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부 소관의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11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에 필요한 예산 1724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983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국회 상임위에서도 곧 소위 예산심의를 할 텐데 거기서도 노력할 테니 복지부도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공형어린이집에 관련된 건데요.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 중 우수한 시설을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위원장대리 김성주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앞서 들었던 사회복지시설처럼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민거리인데요.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 측에서는 이 지방이양사업을 현재 많이 반대하는 이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위원장대리 김성주 그래서 일단은 지방이양을 결정하는 과정 이것은 차차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최소한 기존의 국고지원에 비해서 지방이양 후에도 안정적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도 복지부는 같은 입장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의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양 후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집행 실적이라든지 성과 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지방이양의 경우에 지방세 배분 체계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게 혹시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국고보조액을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또 한 가지 추가해서, 공공어린이집의 품질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2022년 품질관리 사업 예산이 반절 수준만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것 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 부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어차피 지방이양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 사업도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상입니다.

잠시 환기 등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강기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권덕철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김원이 위원 제가 지난 국감 때부터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와 그 대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김원이 위원 의료인력 확충의 길이 막혀서 갈수록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먼저 좀 추진하자, 우선 추진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 권 장관님께서 공감할 표하시면서 다만 의정협의체나 지자체, 교육부와 협의가 좀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협의를 좀 더 힘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김원이 위원 그리고 또 지역의사제의 실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닥터헬기 확충 및 착륙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말씀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특히 전남 지역……

○김원이 위원 이번에 예산에서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김원이 위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필수의료인력 확충 문제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대책 세우고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김원이 위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과 김성주 간사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지역구인 목포의 목포의료원을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본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민석 위원장님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방문했던 목포의료원의 현실을 기초로 해서 지역의료원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 몇 가지를 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에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필수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목포의료원을 봤더니 내과가 5명이예요, 내과 전문의가. 그런데 그중에서 감염병 전담으로 2명이 빠지고 나니까 3명이 그 모든 일반 환자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지역의료원들이 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상당 기간 일반 환자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축소해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격리병실을 운영을 하게 됐지요. 목포의료원도 보니까 299병상 중에서 109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운영했더라고요. 즉 3분의 1 이상이 격리병상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환자를 그만큼 또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의료원장님, 이원구였나요, 목포의료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해에 약 400억 정도의 진료비 수입이 있습니다, 목포의료원이. 그런데 250억 정도에 불과했답니다. 즉 150억 정도의 의료비 손실이 실제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 더해서 부대시설, 즉 장례식장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식당 이런 걸 운영해서 부족한 적자분을 메우는, 그러니까 수익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대시설도 운영하지 못하면서 기타 수입도 확 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적자 폭이, 그러니까 수입 구조가 확 망가졌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보상은 2020년과 2021년 총 합

쳐서 213억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자 폭 심화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이것은 목포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의료원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점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의료장비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최신 장비가 거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합니다. 정부가 돈을 대 줘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많이 안 해주니까 그런 걸 거의 못 샀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최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의료원을 안 오고 그냥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료비로만 유출되는, 1년에 전남도에서 유출되는 의료비 지출이 1조 5000억 정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 그래도 가난한 마을에서 돈 1조 5000억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신, 어떤 장비를 선진화해 주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겠단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긴급치료병상 증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내년까지 쪽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업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까, 긴급치료병상을 증축하는 이 문제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하는데, 증축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즉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나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국가의 일을 해 주면서 돈의 50%는, 거기에 소요되는 50%를 지방정부가 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국가 일을 하면서 지방비까지 대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것은 국비 100%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편성해 주고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이런 부담은 갈수록 지워 주면서 지원을 줄인다면 이것은 지방의료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장관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네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필수의료인력 부족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대안 중의 하나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지방의료원에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의 질이, 수준이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은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방의료원은 지역에 있는 그런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와 지자체가 반절씩 내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혹은 기능 보장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조를 차등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이를테면 실폐괄수가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공익적인 적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 부분도 정부 내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료장비나 시설장비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34개 되는 그 의료원을 전부 한꺼번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이랄지 이런 것을 정부 내에서 그리고 또 국회심의 과정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 한마디만 보태면, 지방의료원들이 서른몇 곳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김원이 위원 다 도립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는데 딱 두 곳, 목포의료원하고 성남의료원만 시가 운영하거든요. 즉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이걸 다 도립에서 맡아 줘야…… 그러니까 시가 원하면 모를까, 시가 도립 전환을 원한다면 전환시켜 주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통상적으로는 도와 시가 같이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포는 좀……

○김원이 위원 목포는 시립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렇습니까? 조금……

○김원이 위원 예, 성남은 스스로 원해서…… 이제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스스로 만든 거고 목포의료원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100년 전에 만들어진 공립병원이 지금까지 시립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립으로 전환해 주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포시와 전남도가 같이 해서 전남도립 이렇게 넘어가는 운영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복지부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인권적·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에 따라 무등록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고 고액 진료비 발생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타 시도의 외국인근로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산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서울·경기를 합한 액수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하고 시도별 미지급금 총액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으면 하는데 장관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공감합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실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부산은 올해 9월 이미 노인 인구가 20.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신중년 인구도 32.8%로 특광역시 중 비율 1위기 때문에 부산시에 광역노후준비센터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내년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그 설치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종헌 위원 장관님,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복지부 산하 3개 공단 중에 심평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되나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기관에 미해당하므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관님,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이 안전감독, 인허

가 규제, 조달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 기관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종헌 위원 심평원하고 건보공단은 약가 협상을 같이 하고 있고 장기요양 업무에서 월케어 계약은 공단에서 하는 등 건보공단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한 말로 답변을 내놓아도 되겠습니까? 혹시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열어 놓은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것은 아니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해당되는 여부, 취업제한의 기관 여부는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백종헌 위원 그러면 하고 있으면서 왜 미해당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저희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백종헌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미해당이라고 합니까?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심평원보다 규모가 크고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기관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고시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장관님, 인사혁신처에 관련 내용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헌 위원 매년 1월 1일에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인사혁신처에 건의해서 적어도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저는 그 의견은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하고 이런 기관하고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초빙 절차 진행 중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 위원** 지금 그 자리에 복지부 전 차관이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 보전용 낙하산 임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하십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저희는 낙하산…… 공단은 임추위를 구성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종헌 위원** 지금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8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남인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 처음 낼 때 중앙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살펴보니 일부 반영되기는 했는데 약 206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추가 확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예산 편성 후에, 제출한 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고려하겠다는 이런 게 재정 당국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특히 중앙사회서비스원뿐만이 아니라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그동안 제대로 법적 정비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됐었는데요. 어쨌든 긴급돌봄이라든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한 131억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남인순 위원** 보육교사 관련한 처우개선 예산 인데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좀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올리려고, 기관보육료 예산을 좀 올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효과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관보육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최저임금에 부족합니다, 약 35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어린이집별로, 반별로 정원이 충족될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양육의 증가라든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상태로 놔두면,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결국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 충족률을 한 6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국공립은 50%가 돼도 인건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로 기준을 해서 반당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약 553억 정도의 추가소요가 필요한데 지금 이게 정부안에는 안 담겨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간에 보육료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상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반당 지원 방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질병관리청장님, 지금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에 대해 사실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1순위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

영되어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이백오십……

○**남인순 위원** 반영을 못 하셨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니 약 248억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부터 도입을 하시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식약처장님, 제가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국감에서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의 오남용 의심 사례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현지조사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현재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억 78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다시 장관님, 지금 공공의료 강화 관련해서 공공병원 실태를 보니까, 앞서서도 김원이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능 강화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주세요.

지방의료원에 대한 증축을 할 때 단가를 좀 인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노후 장비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시설을 신규로 하는 것,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약 225억 정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것 좀 챙기셨나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증액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더 하셔야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현장에서의 어떤 요구들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한 225억 정도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타를 통과해야 신축을 할 수 있고 또 통과하더라도 여러 시설·장비 또 건축비에서 국고보조율이 50% 되는데……

○**남인순 위원** 예타 면제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예산 확보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지폐를 들어 보이며)

질병관리청장님, 이것 얼마입니까? 액수가 얼마입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1만 5000원입니다.

○**서정숙 위원** 예, 1만 5000원이지요. 이게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91년생 수영선수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상금 액수입니다. 이 1만 5000원이 정부가 구입해서 접종하라고 책임 있게 강권한 백신을 정부만 믿고 접종한 후 억울하게 죽은 서른 살 청년에 대한, 국민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 지난 국감 때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호소와 그런 것, 울분을 다 들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서정숙 위원** 청장님도요.

백신 접종 피해자분들과 만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나 보신 적 없으시지요, 두 분 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모임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묵묵부답입니다. 백신 접종 70% 달성했으니 할 일 다 했다 이런 것입니까?

백신 접종의 책임자인 장관과 청장님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피해자분들 직접 만나서 고통에 빠진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접종피해심사 전문위원회 구성의 부실함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분야별로 안전성위원회 부분은 구성해서 내일 발족을 하고요. 피해 보상위원회도 정부위원 대신에 민간위원 2명을,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것 신속히 하서 갖고, 시급한 일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저희 의원실에도 구체 내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81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산정해 놓은 것은 사망 피해 4.4명, 장애 11.4명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내년에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보상 4명, 중증 피해는 11명까지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이 부분은 발생률을 근거로 추계해 놓은 거고요. 감염병법에 의해서 다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상범위가 확대되면 재원 확보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어떤 기준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발생률 기준이라고 보기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와 보상 현황을 보면 질병관리청이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를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국민의 입장에서 느껴집니다.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상자가 총 56명으로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심사결과의 겨우 2.9%에 불

과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심사 현황입니다.

이상반응 신고의 사망 835명 중 인과성 인정이 2명, 중증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이 5명, 인과성 불충분이 4명, 5명 해서 발생률에 비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0.4%, 인과성 불충분이 2.5%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집행 현황을 보면 그나마도 사망 대상 2명에서 신청이 2명인데 현재 집행 상태는 1명입니다. 인과성 불충분 ④-1 등급에 있어서도 대상은 4명인데 아직은 신청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저희가 계속 지자체 통해서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되면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서정숙 위원** 그래서 피해자들이 신청이 어렵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백신 접종에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정부가 제대로 책임도 안 지면서 앞으로 부스터 샷이라는 또 다른 백신 러시안룰렛에 국민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해당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관할 부처에서도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또한 일일 확진자 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지난 7월 7일 이후 단 한 번도 10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출도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치료제 예산을 내년 1/4분기까지만 산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편성도 본예산을

편성·심의하는데 예비비 사용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치료제 필요기간과 확진자 수 예측을 보수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정숙 위원 그러한 노력을 하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심근염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심근염은 인과성에 대한 게 계속 검토 중이어서 ④-1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서정숙 위원 화이자 부작용에 공공연하게 심근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아마 그게 보상으로 포함되게 되면 제대로 된 보상이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과성 인정 범위에 대한 확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서정숙 위원 이 젊은이가 1차 접종 후 3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절대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병청장님, 지난 국감 때 제가 ‘10대 이하 소아청소년은 확진이 되더라도 중증·사망 위험이 낮은 반면에 백신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굳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제가 제기했던 표입니다.

연령별 확진자·사망자 현황, 10월 20일 기준

으로 10대 이하 확진자가 4만 1000명이었는데 사망 누계 제로, 위중증 제로였던 말이에요.

11월 10일, 어제 기준으로 발생 확진자는 6만 명이지요. 6만 명 정도인데 사망자 제로, 위중증 1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10대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나서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 다시 넘겨 보세요.

‘17세 이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 이상반응이 1000명 정도 되고 중대한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9명, 주요 이상반응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요 이상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생명이 위중하거나 영구장애, 후유증이 생기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백신을 맞아서 오히려 이런 정도로 중환자실에 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위원님, 아까 보여 주셨던 18세 이하 위중증 사례는 현재 시점에서 1명이라는 얘기고요. 누적해서는 15명 정도의 위중증 사례가 보고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좀 보충설명……

○이용호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게 계속 누적을 받은 건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 국감 때는 20대 이하들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으면 백신의 실익이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위험한 건 맞고요. 건강한 아이들도 위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제가 기억하는 걸로 봐서는, 백신을 청소년들한테 맞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위험하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맞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기저질환자는 적극 권고하고요. 건강한 아이들도……

○이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부는 또 제외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왜 건강한 아이들에게 맞히고,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가지를 앓는데 굳이 백신을 맞혀서, 실익 없는 걸 맞혀서 왜 중환자실로 보내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확진이 돼도 얼마든지 다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왜 맞혀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도표 주요 이상반응이라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나필락시스 의심도,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도 위험한 정도로 가 있는 것이고. 왜 질병청이 젊은 건강한 아이들을 맞혀서 문제를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순진한, 순수한…… 정부 얘기를 잘 믿는 학부모, 학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지금 보여 주신 사례는 의심사례로 신고된 사례고요. 아직은 인과성에 대한 판단이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반응이라는 게 중환자실에 간 것은 신고됐지만 하여튼 맞고 나서 중환자실 간 거 아닙니까, 10명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런데 그게 백신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지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용호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데 이것 맞고 나서 중환자실 갔다고 이상반응으로 신고하겠어요? 원래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지.

그래서 저는 자꾸 정부가…… 10대 이하의 실익이 별로 없다, 제 주장은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걸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백신 돈 들여서 자꾸 맞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를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저를 설득 좀 해 달라니까요.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일단은 코로나19 유행이 진행이 되면서 접종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으로 유행이 좀 더 증가될 위험이 굉장히 큼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증가돼도 다 낫는다니니까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그중에는……

○**이용호 위원** 6만 명이 걸렸는데 1명도 사망자가 없다니까요. 중증으로 가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위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여러 번 요구했는데 1명도……

그리고 실제로 주요 이상반응이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누적해도.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앞으로 백신 내가 보니까 5세에서 11세 젊은 아이들까지 맞힌다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백신회사들이 앞으로 나이 든 사람한테 충분히 맞혔으니까 젊은 애들한테 맞혀서 장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요.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학부모들 납득할 수 있게, 저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연령인 경우에는 코로나 19 유행이 계속 진행되면 아무래도 미접종자 중심으로 유행이 증가하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그중에는 위중증이나 다른……

○**이용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왔었는데 하여튼 10대 이하의 없잖아요, 1명도. 그렇게 6만 명이 걸렸어도 1명도 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사망자는……

위원님, 제가 통계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9세 이하가 한 5만 5000명, 6만 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위중증 사례는 한 15명

정도 생겼고 또 다기관염증증후군이라는 합병증도 한 7명 정도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런 중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익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맞아도 그 정도 걸리고 또 항체 생기는 것도 6개월 이내에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유도하지 말라고요. 더구나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맞혀서 자꾸 마치 강제하듯이 교육부 쪽에서는 하는데……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용호 위원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답변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데이터 가지고, 1명도 안 죽었고 6만 명 중에서 사망자가 없고, 그러면 백신 맞아서 그 실익이 없습니까요. 그 설득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여튼 나중에 따로 설명 주시고 아니면 제가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조금만 드리면, 그런 의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격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거나 학습결손 같은 그런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이용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청장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일반 대다수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위원님 질문을, 그렇게 질병청 입장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하튼 여하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잘 설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반응자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아직 인과성이 확인 안 됐다, 인과성 확인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 처음 왔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성을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백신을 맞고 이렇게 지금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여하히 우리가 설명할 거냐 하는 부분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이어서 내년도에 드디어 시범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이후에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이 급증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질병의 취약계층인 노동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이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할 경우에 소득상실에 대한, 그래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회가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안전망을 좀 촘촘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을 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K형 상병수당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한 것은 정부가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된 예산으로 보면 대기기간하고 보장기간을 다양하게 해서 3개의 모형에 6개 지역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전 국민 1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범사업으로서 효율성이나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적 자료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 할 때도 저희들이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고요. 특히 상병수당은 저희들이 이렇게 즉 다른 나라 사례 또 우리에게 적용 방향을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과에서부터 보장 범위 또 다른 제도와와의 관계.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일단 전 국민의 한 5% 정도로 해서 질병의 범위를 가지고 6개 지역에서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단계·3단계, 특히 3단계에 가서는 본격 실시를 앞두고 본사업의 전체 모형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는, 그렇게 가는 게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마련한 방안인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단계 사업을 할 때 이런 단계의 지역이랄지 또 인구 대상의 선정이랄지 이런 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범사업이라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누적돼서 지적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인건비 반영이나 이런 게 한 85% 정도 되어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100%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보면 1724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빠진 것 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정규직으로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단일임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우선 가이드라인 100%도 안 지켜지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구체적 고민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걸로 보여지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여러 가지 보육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저희 복지부도 노력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 주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답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983억 정도, 11.3%를 증액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준수율이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94%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려야겠다는 데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분하지 않고 같이 지금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은 특히 소규모 또 민간, 가정, 농어촌 이런 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주신 증액이랄지 이런 데 대해서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논의, 심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국민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도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내년도 백신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추가접종인 부스터 샷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기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이 내년도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접종을 받게 되는 건지, 돌파감염이 심해지니까 6개월이 지나면 체계적으로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학생들에 대한 접종률은 또 어떻게 제고를 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내년도 백신예산이 쪼들어요. 그러면 백신을 종류별로 어떻게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요.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해서 위험이 높아지고 의료체계 붕괴위험이 있으면 비상계획 전환이나 일부 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이미 발표를 드려서 그 부분은 계속

같이 노력하면서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접종 관련해서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계속 기본접종을 시행하고요. 기본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현재로서는 6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하되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은 5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강한 성인에 대해서 추가접종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국민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주기적인 추가접종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백신 구매는 저희가 9000만 회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고 이미 화이자 백신을 6000만 회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회분에 대해서는 2000만은 mRNA로 결정은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을 검토 중에 있고요. 1000만 회분은 국내 백신으로 구매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사용하고 남은 이월된 백신과 내년도 구매한 백신을 가지고 추가접종, 기본접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 접종 제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은 불안과 우려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학생들에서의 위험도와 또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의 현황이나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오늘 예산심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이 앞으로 6개월마다 우리가 부스터 샷이랄까요, 추가접종을 해야 될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 또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차는 억지로 맞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1차 맞고 나서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2차를 맞을까 말까 고민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안심스럽게 2차 맞아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다시 3차를, 6개월마다 이렇게 부스터 샷을 하게 된다면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아까 이상반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지는 모습들,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충분히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이런 노력들이나 또 맞아도 충분히 다 완쾌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지금 맞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특별히 그런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윤 위원 제가 마지막……

○위원장대리 강기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장관님, 보육교사 관련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연차휴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최종윤 위원 그러면 보육 공백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육교사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휴게 시간도 잘 보장돼 있지 않고 업무 부담도 굉장히 높는데 작년에 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8000명 정도가 현장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최소한 6000명 정도는 아마 보조교사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그렇게 따져 보니까 한 330억 정도가 더 소요되더라고요. 이것 이렇게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저도 공감합니다. 교사와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아동의 양육이랄지 교육이랄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육교사를 다 못 늘리면 이런 보조교사라든지 대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윤 위원 이 문제는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도 예결위 과정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중요한 문제라.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국공립은 그래도 좀 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폐원을 하거

나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일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분들에게 교사들이 배치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 기준을 정하셔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곳에 인력이 더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배치가 돼야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리고 대체교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보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가 긴급 사유가 생겨서 부재 시에 대체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복지부에서는 매년 기계적으로 700명씩 증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체교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700명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00명 정도만 더 추가로 하면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대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추가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사실은 이게 40억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체교사 모집할 때 서류 증빙하는 것 그리고 채용 절차 있잖아요. 이게 좀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서 간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리고 상병수당 도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하잖아요, 지금 예산 110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은 몇 군데 정도 할 생각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여섯 군데에 3개 모델로 해서……

○최종윤 위원 대개 보면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할 때 더 많이 했었지요, 지역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장기요양보험도 비슷

했습니다, 단계별로 했을 때.

○최종윤 위원 거의 비슷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최종윤 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실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다른 요구도 있어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해서 실시를 좀 유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철저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만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실시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감염병 유급휴가법을 발의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이 3일, 14일이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감염병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2주가 지나게 되면 상병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사실 서울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라 그래 가지고 돈을 8만 5000원 정도 주거든요, 우리가 원래 설계한 것은 4만 3000원인가 5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3년, 4년 정도 실시할 것 같은데 그사이에 이런 데에 대한 공백을 좀 메꾸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근로취약 계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그래서 유급휴가법을 발의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정점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상병수당은 보험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염병에 관련된 그런 것은 또 다른, 국비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아까 6개 지역에서 세 가지 모델로 좀 해 보면서 다른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유급병가라든지 아니면 유급휴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은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설계하면서 또 마련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0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1항 및 제272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기간 동안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스물세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 기 윤	강 병 원	강 선 우	고 민 정
고 영 인	김 미 애	김 민 석	김 성 주
김 원 이	남 인 순	백 종 헌	서 영 석
서 정 숙	신 현 영	이 용 호	이 종 성
인 재 근	전 봉 민	정 춘 숙	최 연 숙
최 종 윤	최 혜 영	허 종 식	

○청가 위원(1인)

이 달 곤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홍	형	선
전 문 위 원	신	항	진
전 문 위 원	정	순	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	관	권	덕	철
제 1 차 관	양	성	일	
기획조정실장	박	민	수	
사회복지정책실장	박	인	석	
인구정책실장	고	득	영	
보건의료정책실장	이	기	일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단장	이	강	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장	김	강	립
차	장	김	진	석
기획조정관		한	상	배
질병관리청				
청	장	정	은	경
기획조정관		양	동	교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정춘숙·김정호·김성주·김영진·김윤덕·박정·민형배·임종성·허종식·최혜영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이원욱·고용진·김민철·김영주·김주영·송옥주·유기홍·이용빈·한준호·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고민정·권칠승·김민석·김주영·민병덕·서삼석·신영대·용혜인·이용우·임종성·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7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신현영·김승원·최종윤·박홍근·위성곤·김경만·이수진·홍기원·유정주·허종식·이용우·도종환·이규민·황운하·민형배·이용빈·이광재·맹성규·이용호·오영환·이병훈·정찬민·김민석·윤준병·윤건영·김영배·박영순·양이원영·강민정·천준호·양정숙·김진표 의원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장혜영·이은주·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김두관·이수진·김성주·고민정·허종식·남인순·강민정·김상희·용혜인·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8일 회부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이용빈·김경협·유정주·김민철·윤영찬·양정숙·한준호·김윤덕·홍정민·강은미·김홍걸·조정훈·오영환·김진표·

이정문 · 한병도 · 이원욱 · 김민석 · 김성주 · 강득구 · 이광재 · 장경태 · 이용호 · 고영인 · 김병욱 · 윤준병 · 이용선 · 조오섭 · 정춘숙 · 전해숙 · 서영석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김원이 · 홍성국 · 박상혁 · 최혜영 · 이동주 · 기동민 · 김성주 · 박홍근 · 유정주 · 우원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김원이 · 기동민 · 김성주 · 박상혁 · 박홍근 · 우원식 · 유정주 · 이동주 · 최혜영 · 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30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9. 30. 강병원 · 김두관 · 김민철 · 김병기 · 김승원 · 이광재 · 이수진(비) · 이원욱 · 임호선 · 장경태 의원 발의)

10월 1일 회부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이종성 · 김용관 · 박대수 · 김기현 · 박덕흠 · 서일준 · 추경호 · 정운천 · 김영식 · 윤창현 · 강기윤 의원 발의)

10월 5일 회부됨

소아 · 청소년 · 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이명수 · 金炳旭 · 김상훈 · 김예지 · 김형동 · 노웅래 · 서병수 · 성일종 · 이주환 · 장경태 · 최춘식 · 황보승희 의원 발의)

10월 8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2. 허종식 · 김성주 · 신동근 · 유동수 · 정일영 · 이성만 · 김정호 · 어기구 · 배진교 · 김교홍 · 박찬대 · 이동주 의원 발의)

국제입양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2. 김성주 · 고민정 · 고용진 · 김민석 · 김원이 · 남인순 · 박상혁 · 서영석 · 소병철 · 신영대 · 양정숙 · 윤준병 · 이용빈 · 이학영 · 임호선 · 전용기 · 정춘숙 · 조승래 · 최종윤 · 최혜영 · 허종식 · 홍성국 · 홍정민 · 황운하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2. 김성주 · 고민정 · 고용진 · 김민석 ·

김원이 · 남인순 · 박상혁 · 서영석 · 소병철 · 신영대 · 양정숙 · 윤준병 · 이용빈 · 이학영 · 임호선 · 전용기 · 정춘숙 · 조승래 · 최종윤 · 최혜영 · 허종식 · 홍성국 · 홍정민 · 황운하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2. 김성주 · 이학영 · 홍정민 · 고민정 · 홍성국 · 조승래 · 박상혁 · 최혜영 · 남인순 · 김민석 · 이용빈 · 신영대 · 고용진 · 김원이 · 황운하 · 임호선 · 최종윤 · 전용기 · 윤준병 · 소병철 · 허종식 · 정춘숙 · 서영석 · 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13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3. 조명희 · 金炳旭 · 김용관 · 박대수 · 성일종 · 유의동 · 이태규 · 최승재 · 추경호 · 홍문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3. 강병원 · 김영호 · 윤영찬 · 허종식 · 전해숙 · 유동수 · 김민석 · 서영석 · 윤관석 · 임호선 · 이광재 · 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4일 회부됨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4. 김민석 · 강득구 · 고민정 · 김성주 · 김영주 · 김원이 · 박상혁 · 서영교 · 서영석 · 안호영 · 이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윤준병 · 이병훈 · 이성만 · 이용빈 · 이용선 · 이학영 · 임오경 · 정성호 · 정태호 · 최혜영 · 한병도 · 허종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4. 김민석 · 허종식 · 위성곤 · 김영주 · 박상혁 · 이병훈 · 김성주 · 정태호 · 임오경 · 이성만 · 이용선 · 최혜영 · 강득구 · 이학영 · 김원이 · 윤준병 · 고민정 · 한병도 · 우원식 · 이상호 · 서영석 · 이용빈 · 서영교 · 안호영 · 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5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강병원 · 고영인 · 권철승 · 기동민 · 김민석 · 김병기 · 박홍근 · 이수진(비) · 임호선 · 최종윤 · 허종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고민정 · 조오섭 · 권칠승 · 김두관 · 김원이 · 김주영 · 양경숙 · 최혜영 · 김민석 · 백혜련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허종식 · 신동근 · 유동수 · 정일영 · 이성만 · 김정호 · 어기구 · 배진교 · 김교홍 · 박찬대 · 최종윤 · 이동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8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8. 최혜영 · 강병원 · 김성주 · 김영배 · 김원이 · 류호정 · 박홍근 · 인재근 · 정춘숙 · 조오섭 · 최종윤 · 허종식 의원 발의)

10월 19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0. 최연숙 · 권영세 · 윤두현 · 이은주 · 전봉민 · 김성주 · 최종윤 · 이달곤 · 이태규 · 권은희 의원 발의)

10월 21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1. 조명희 · 金炳旭 · 김형동 · 박대수 · 박덕흠 · 백종현 · 안병길 · 유의동 · 이태규 · 최승재 · 추경호 · 홍문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1. 조명희 · 金炳旭 · 김석기 · 김용환 · 김형동 · 박대수 · 박덕흠 · 성일종 · 유의동 · 최승재 · 추경호 · 홍문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1. 10. 21. 정부 제출)

이상 4건 10월 22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강병원 · 강선우 · 권칠승 · 김두관 · 김성주 · 오영환 · 유기홍 · 이용호 · 이정문 · 허종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인재근 · 강선우 · 고영인 · 권인숙 · 김한정 · 김홍걸 · 남인순 · 서동용 · 소병훈 · 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5일 회부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5. 조명희 · 金炳旭 · 김형동 · 박대수 · 박덕흠 · 백종현 · 성일종 · 유의동 · 최승재 · 추경호 · 홍문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5. 조명희 · 金炳旭 · 김석기 · 김형동 · 박대수 · 박덕흠 · 백종현 · 성일종 · 안병길 · 유의동 · 이태규 · 최승재 · 추경호 · 홍문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6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김상희 · 강준현 · 류호정 · 백혜련 · 서영교 · 이상현 · 이해식 · 인재근 · 정춘숙 · 최종윤 · 최혜영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이종성 · 강기윤 · 김기현 · 김승수 · 김예지 · 김태호 · 김형동 · 박대수 · 서정숙 · 정운천 · 최형두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고영인 · 권칠승 · 김경만 · 김남국 · 김홍걸 · 이용빈 · 이해식 · 이형석 · 전재수 · 홍정민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고영인 · 권칠승 · 김남국 · 김홍걸 · 윤미향 · 이용빈 · 장철민 · 전재수 · 정태호 · 홍정민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배현진 · 김상훈 · 김형동 · 윤영석 · 이명수 · 정희용 · 최형두 · 추경호 · 태영호 · 허은아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27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서동용 · 권인숙 · 김정호 · 김철민 · 박찬대 · 안민석 · 유기홍 · 윤영덕 · 이동주 · 인재근 의원 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김성주 · 강병원 · 박상혁 · 이용빈 · 임호선 · 전용기 · 정춘숙 · 최연숙 · 최혜영 · 허종식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인재근·김민기·소병훈·최혜영·
김성주·서동용·최종윤·조오섭·서영석·
오영훈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인재근·서영석·김성주·김민기·
최종윤·조오섭·서동용·소병훈·최혜영·
오영훈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인재근·김민기·소병훈·최혜영·
김성주·서동용·최종윤·조오섭·서영석·
오영훈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배진교·심상정·양정숙·김홍걸·
류호정·이은주·장혜영·허종식·이수진(비)·
강은미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인재근·김민기·김성주·서동용·
서영석·소병훈·오영훈·조오섭·최종윤·
최혜영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인재근·김민기·김성주·서동용·
서영석·소병훈·오영훈·조오섭·최종윤·
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8건 10월 28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강기운·추경호·태영호·전봉민·
박성중·백종헌·최형두·성일중·윤주경·
권명호·김희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강기운·권명호·김희국·백종헌·
서병수·성일중·전봉민·최형두·추경호·
태영호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서정숙·전주혜·김영식·권명호·
박대수·김예지·이채익·이만희·이철규·
최춘식·김석기·서범수·김상훈·추경호·
백종헌·김선교·김승수·박성민·하영제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강기운·서병수·김희국·성일중·
추경호·최형두·백종헌·전봉민·권명호·
태영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강기운·추경호·태영호·전봉민·
박성중·백종헌·최형두·서병수·성일중·
윤주경·김희국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서정숙·구자근·권명호·김석기·
김영식·김예지·박대수·박대출·박성민·
백종헌·서범수·서일준·양금희·이만희·
이채익·이철규·정경희·최춘식·추경호·
하영제 의원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강기운·서병수·김희국·태영호·
윤주경·최형두·백종헌·전봉민·성일중·
권명호·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2일 회부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강병원·임호선·오영환·권칠승·
김민석·한준호·김병기·최혜영·김영호·
김성주·우상호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21. 11. 2. 최혜영·김민철·남인순·조오섭·
김남국·양향자·박홍근·이은주·서영석·
강선우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최혜영·강선우·김승원·남인순·
박홍근·서영석·양향자·이은주·조오섭·
최기상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김영호·강병원·김민기·김종민·
김홍걸·서영교·위성곤·윤건영·이병훈·
이용호·이장섭·정청래·한병도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허종식·김정호·유동수·어기구·
이성만·김성주·김민기·이용선·김교홍·
박찬대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이용호·한병도·윤미향·이용빈·
최연숙·강득구·고용진·정동만·박상혁·

민병덕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성일종 · 김성원 · 백종현 · 안병길 · 양금희 · 이주환 · 전봉민 · 정동만 · 홍문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3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고민정 · 김주영 · 오영환 · 용혜인 · 김민석 · 김성주 · 서삼석 · 윤건영 · 김정호 · 최혜영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임호선 · 이학영 · 이장섭 · 이형석 · 오영환 · 박광온 · 김성주 · 신영대 · 전용기 · 기동민 · 김민철 · 이은주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김원이 · 기동민 · 김경협 · 김성주 · 박상혁 · 양향자 · 우원식 · 위성곤 · 이해식 · 임종성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장제원 · 박대수 · 구자근 · 윤한홍 · 태영호 · 서정숙 · 최승재 · 백종현 · 권영세 · 정진석 · 이주환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4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김원이 · 기동민 · 김경협 · 김성주 · 박상혁 · 양향자 · 우원식 · 위성곤 · 이해식 · 임종성 의원 발의)

11월 5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5. 이종성 · 김기현 · 김영식 · 김태호 · 박대수 · 서범수 · 서일준 · 이종배 · 정운천 · 한무경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5. 장혜영 · 배진교 · 강선우 · 김홍걸 · 김예지 · 류호정 · 심상정 · 강은미 · 최혜영 · 이은주 · 용혜인 · 강민정 · 김성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8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김성원 · 최춘식 · 이주환 · 김용판 · 박대출 · 송언석 · 박대수 · 김상훈 · 임이자 · 김정재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이종성 · 김기현 · 김영식 · 박대수 · 박형수 · 서범수 · 서일준 · 이종배 · 정운천 · 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9일 회부됨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5. 金炳旭 · 김승수 · 김형동 · 백종현 · 서일준 · 신원식 · 유경준 · 이명수 · 이현승 · 태영호 의원 발의)

11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박상혁 · 김남국 · 김윤덕 · 문진석 · 민형배 · 박정 · 안호영 · 여기구 · 이정문 · 임오경 · 최인호 의원 발의)

9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1. 10. 1. 정부 제출)

10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0. 8. 유의동 · 구자근 · 김기현 · 김영식 · 송석준 · 양금희 · 이영 · 정찬민 · 조명희 · 추경호 · 한무경 의원 발의)

10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9. 신영대 · 위성곤 · 박성준 · 이용빈 · 안호영 · 고영인 · 신정훈 · 이개호 · 서영교 · 허영 의원 발의)

11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김승남 · 김정호 · 양정숙 · 윤재갑 · 송갑석 · 인재근 · 이인영 · 이용빈 · 주철현 · 이수진(비) · 최종윤 · 민형배 · 김경만 · 진성준 의원 발의)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

(2021. 11. 9. 한병도 · 이형석 · 홍성국 · 강준현 · 오영훈 · 이원택 · 김승원 · 김민석 · 이용빈 · 고용진 · 양기대 · 허영 의원 발의)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고영인 · 권철승 · 김정만 · 김남국 · 김홍걸 · 이용빈 · 이해식 · 이형석 · 전재수 · 홍정민 의원 발의)

10월 29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회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2021. 10. 25. 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10월 25일 회부됨